

2.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가. 서 설

(1) 개 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17조는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14조에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에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⁴²⁸⁾⁴²⁹⁾

민법 제217조의 규정은 토지 자체의 지배 내지 이용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⁴³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소는 “부작위 채무의 소”라고도 한다. 부작위 채무는 주거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매연, 소음, 진동, 일조, 통풍, 정온, 조망 등 주거환경의 침해가 그 사례이다.

판례는 “매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생활방해나 일조, 통풍, 정온, 조망 등 주거환경의 침해는 토지소유권의 침해의 범주에 넣어 볼 수 있지만, 그 주된 피해법익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으로서 이러한 주거환경의 이익은 그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건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생활방해나 주거환경의 침해는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 내지 정신

428)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판결

429)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430)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 상고

적 자유의 침해에 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소유권 기타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막바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인격권에 터 잡아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⁴³¹⁾”고 한다.

또 다른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⁴³²⁾고 한다.

(2) 부작위 채무를 인용한 사례

㉠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제3자가 비록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 중인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⁴³³⁾

㉡ 인접 대지 위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 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로서의 경관·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대학교측으로서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431)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 상고

43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433)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⁴³⁴⁾

㉔ 피신청인이 건축중에 있는 4층 복단 교실 중간에 설치된 복도와 위 교실 서쪽 벽에 신청인들의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위 교실 복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⁴³⁵⁾

(3) 부작위 채무를 기각한 사례

㉕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이상 확대된다고 볼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⁴³⁶⁾

㉖ 도시재개발법상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고 장차 재개발조합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⁴³⁷⁾

㉗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⁴³⁸⁾

43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435)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4 판결

436)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437) 대법원 1999. 11. 11.자 99마3102 결정

438)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등의 청구취지 기재례

㉠ 공사방해금지 청구(담장공사)

1. 피고들은 서울 ○○구 ○○동 83-5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부분 대 132㎡ 중 같은 도면 표시 ㄱ에서 ㄴ과, ㄴ에서 ㄷ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원고가 설치하는 담장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에게 위 대 132㎡ 중,
 - 가. 피고 양○○은 같은 도면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부분 대 1.3㎡ 지상에 건립된 높이 1.85m 두께 0.1m 길이 11.4m의 세멘브록크 담장을 철거하고 위 대지 1.3㎡를 인도하고,
 - 나. 같은 조○○은 같은 도면 표시 7, 8, 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부분 대 0.9㎡ 지상에 건립된 높이 1.7m 두께 0.1m 길이 15.4m의 붉은 벽돌조 담장을 철거하고 위 대지 0.9㎡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건물공사금지 청구

1. 피고는 ○○시 ○○구 ○○동 123-4 대지 100㎡ 중 별지 도면 표시의 (가)점에서 (나)점에 이르는 경계선에서 10m 이내의 장소에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위 10m 이내의 토지상에 건축중인 건물부분을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이용업의 영업양도에 대하여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이용업은 보통 소규모의 자본과 시설을 가지고 운영자의 기술과 친분으로 일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작은 도시에도 수십 군데의 이용업소가 있고, 영업양도 또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업은 상법 제46조 제9호에서 정한 상행위에 속하지 단순히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규정이 이용업의 영업양도에 대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② 상법 제41조의 입법 취지 및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상법 제41조에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구역에 인접 행정구역을 포함시킨 것은 행정구역 경계 주변에 소재하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 동일 행정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접 행정구역에서의 경업이 허용되면 사실상 경업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나아가 상법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영업양도인을 제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업금지 조항에 의하여 영업양수인이 보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행정구역 경계에 소재하지 않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제한 없이 적용하여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를 인접 행정구역에까지 넓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제주지법 1998.6 선고 98가합129 판결)

☐ 방해배제 청구(소음공해)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 ○○구 ○○동 123-1 지상에 건설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에서 일몰 후 6:00부터 일출전 6:00까지에 굉음을 내어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소유의 위 ○○에 대하여 별지 공사시방서와 같이 소음방지벽을 설치하라.
3.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 광업권·광천방해배제·채광금지 등

☐ 광업권배제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군 ○○면 ○○리 산 912 임야 249,124㎡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0㎡ 지상에 설치된 높이 22m의 송전철탑 1기와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3㎡ 지상에 설치된 높이 22m의 송전철탑 1기 및 위 각 철탑 사이에 가설된 길이 350m의 전선을 각 철거하라.

[참조판례] 광업권의 효력 범위 및 광업권에 기해 광구 지표 상의 영조물에 대한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된 광물을 지중으로부터 채굴·취득하는 권리로서 물권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중의 광물을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으로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광업권의 효력이 토지의 지표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광업권자가 지표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광업법 제86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상공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토지의 사용·수용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고, 광업권자로서는 토지 지표의 사용에 관한 다른 배타적인 권원이 없는 한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광구의 지표에 설치된 영조물에 대하여는 광업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57336 판결)

☐ 채광금지등 청구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광산 내에서 채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공유관계가 청산된 등록부상의 공동광업권자의 권리

광업권을 공동소유한다는 내용이 광업권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공동소유권자들이 내부관

계에 있어서 이미 공동소유관계가 청산되어 탈퇴한 사람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의 지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광업권의 공동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76. 5. 20. 선고 73나205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 광천방해배제 청구(예비적 병합, 공작물철거 등)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시 ○○군 ○○읍 ○○리 123-4 대 100㎡ 중 별지 도면 적선표시 부분 (도면 중 가, 나, 다, 라를 연결하는 선내)에서 광천수를 양수하거나, 광천수 양수를 위한 일체의 시설과 광작물을 설치 가동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행위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위 제1항 기재의 지점에서 설치한 광천수 양수를 위한 일체의 공작물을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라.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 부정경쟁금지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1사진의 용기에 리본모양의 도형 위에 십자가 모양의 도형을 겹쳐놓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표지가 그려진 용기를 사용한 자동차용 광택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공장, 창고, 사무실, 대리점에 보관중인 피고 소유의 같은 표지가 그려진 자동차용 광택제의 용기를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지청구권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중지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의 정지이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지'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가운데의 '중지'의 범위는 당해 부정경쟁행위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 내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에서 '중지'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90 판결)

❏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

1. 피고는 상호 또는 상호의 일부로서 한글 “아메리카” 또는 영문 “Americ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가 생산하는 상품, 그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에 한글 “아메리카” 또는 영문 “America” 혹은 그것들을 병기한 표장을 부착 또는 인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표장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Angel 상표가 부착 또는 표시된 상품을 생산, 판매, 반포, 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는 피고 경영의 공장, 사무실, 창고 및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제1항 기재 표장 및 Angel를 사용한 상품 및 그 포장용기, 선전광고물 기타 인쇄물을 폐기하라.
5.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소정의 “타인”의 개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개념에는 특정의 표시에 관한 상표 등 사용계약에 의하여 결속한 동 표시의 사용허락자,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의 집단과 같이 동 표시가 갖는 출처식별기능 품질보증기능 및 고객흡입력을 보호·발전시킨다고 하는 공통의 목적하에 결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집단도 포함된다.

② 주지상품 표시의 소유자가 일시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동안 제3자가 유사한 상품 표시 하에 동종 영업을 개시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법적 보호 여부

주지상품 표시의 소유자가 일시 영업을 휴지하고 있는 동안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표시하에서 동종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되고 이러한 부정사용을 계속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법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음은 변함이 없다.

③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가맹국의 국민인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가맹국의 국민인 외국인은 같은 협약 제1조, 제2조 제1항,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자의 상호등록 당시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민과 동일하게 취급받게 되어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서울고법 1997.8.12 선고 95나36598 판결)

㉔ 부정경쟁행위예방 청구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의 상표들을 햄, 베이컨, 소세지, 육포 축산물이유식, 돈까스, 비프스테이크, 햄버거, 축산물의 병조림 및 통조림 제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㉕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서적, 카세트 테이프, 카드와 그에 관한 카다로그를 제작, 판매, 반포 및 수출함에 있어서 그 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 또는 이에 유사한 상표 및 상호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2.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서적, 카세트 테이프, 카드와 그에 관한 카탈로그에 원고와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피고는 사무실, 창고 등에 보관중인 그 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가 기재된 별지 제1목록 기재 서적, 카세트 테이프, 카드 및 그에 관한 카탈로그와 반제품(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가 기재된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폐기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사과광고를 ○○일보, ○○일보, ○○일보, ○○일보의 각 지상에 별지 제4목록 기재 규격으로 각 게재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㉖ 부정경쟁중지 청구

1. 피고는 그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에 별지 제1목록기재의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보, ○○일보, ○○공론, ○○신문에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사과문을 같은 제3목록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각 1회씩 게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물네오파스가 물파스와 유사한 상표인지의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독점사용권이 인정되

는 경우

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표로서의 독점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표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없어서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고, 독점사용의 실적이 있을 뿐더러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상표로서 독점사용케 할 수 있다.(남부지원 1984.1.20. 선고 83가합251 판결)

❖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

1. 피고는

-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품들과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위 상품들을 제조, 판매, 양도, 인도,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 나. 위 표장을 위 상품들의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상품라벨, 거래서류,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물에 표시, 부착,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 다. 피고의 공장, 사무소, 창고, 차량 및 기타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위 상품들과 그들을 위한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상품라벨, 거래서류,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물에서 위 표장 부분을 각 폐기하고,
 - 라.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3. 1.부터 2004. 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보드게임의 일종인 '부루마블게임'의 상표로서 널리 주지성을 가지고 있는 '부루마블'이라는 표장을 무단 사용하여 위 게임과 유사한 보드게임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0가합1820 판결: 확정)

마. 도매인, 상표권침해금지·상호사용·표장사용중지 등

❖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 청구

피고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소외 주식회사 ○○닷컴에 등록한 한글인터넷주소 중 (1) "○○온돌"과 "돌침대"를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2) "○○온돌"과 "돌침대"를 원고에게 각 이전하라.

[참조판례]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다51577 판결[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

❖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 청구

1. 피고 1, 피고 ○○연맹은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인터넷도메인이름을 위 피고들의 인터넷도메인이름으로, 피고 2, 피고 ◇◇연맹은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5항 기재 한글인터넷주소를 위 피고들의 한글인터넷주소로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1은 원고 ○○연맹, 원고 □□연맹에게 위 피고가 캐나다 토론토시 소재 투카우스사에 등록한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인터넷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1은 원고 사단법인 ○○연구회에게 위 각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말소 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2는 원고 사단법인 ○○연구회에게 위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닷컴에 등록한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5항 기재 한글인터넷주소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사단법인 ○○연구회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결국, 위 원고에게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 금지를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위 금지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06.05.24. 선고 2005나 23034 판결[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

❖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03. 6. 10.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등록한 ‘○○박사’라는 한글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서비스표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서비스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어떤 표지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www.pachulpaksa.com)에 연결되도록 하여 그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다31174 판결[인터넷주소등록말소])

☐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 청구

1. 피고는,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2014. 6. 7. 등록한 “moneycard.co.kr”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판례] ①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스타카드(MasterCard)’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고, 위 회사가 ‘mastercard. 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신용카드업체가 인터넷 홈쇼핑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쇼핑업무와 유사한 웹메일카드서비스 업무를 준비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로 보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서울지법 2000. 9. 8. 선고 2000가합6471 판결)

[별 지]

제 1 목록

1. MONEYCARD.CO.KR

2. moneycard.co.kr

제 2 목록

1. MONEYCARD

2. moneycard.co.kr

3. 머니카드

제 3 목록 (상표의 표시)

상표등록번호 : 제012345678호

출원연월일 : 2013. 7. 20.

등록연월일 : 2014. 6. 7.

지정상품 : 제52류(크레디트카드, 여행자수표, 데빗카드, 금융관련 팸플릿, 소책자, 회보 및 잡지)

제 4 목록 (서비스표의 표시)

1. 서비스표등록번호 : 제02345678호

출원연월일 : 2013. 6. 1.

등록연월일 : 2014. 1. 14.

지정서비스업 : 제102류(신용카드제공업, 직불카드제공업, 차-지카드제공업, 현금환불, 거래승인 및 정산업)

2. 서비스표등록번호 : 제03456789호

출원연월일 : 2013. 4. 4.

등록연월일 : 2014. 5. 29.

지정서비스업 : 제106류(여행자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 그것을 신고하거나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또는 현금지급서비스의 요청을 할 때에 이를 용이하게 돕기 위한 업무)

3. 서비스표등록번호 : 제04567891호

출원연월일 : 2013. 4. 29.

등록연월일 : 2014. 1. 14.

지정서비스업 : 제102류(신용카드 제공업, 직불카드 제공업, 차-지카드 제공업, 선불카드 제공업, 여행자수표업, 현금환불, 거래승인 및 정산업)

4. 서비스표등록번호 : 제05678912호

출원연월일 : 2013. 10. 21.

등록연월일 : 2014. 2. 10.

지정서비스업 : 제102류(크레디트카드 제공업, 데빗카드 제공업, 현금지불업)

☐ 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인 “○○○”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햄버거를 제조, 판매하거나 이를 위하여 분점 또는 연쇄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 ○○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일보 및 ○○일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과광고를 4호 활자의 3단 10cm 크기로 각 3회 이상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서어비스표를 유형적인 상품에 부착하는 행위가 서어비스표의 권리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

등록된 서어비스표의 효력은 지정된 서어비스업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서어비스표를 유형물인 상품에 부착하는 행위는 서어비스표의 권리범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어비스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그 서어비스표가 상표법 소정의 확정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등록상표와 상표권을 침해한다.(서울고법 1987.12.24. 선고 84나4257 판결)

☐ 상표권침해중지(지) 청구

1. 피고는 “○○○”라는 상표를 세제포장용 상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본점, 지점, 공장, 창고, 직영판매점에 보관 중인 “○○○”라는 상표가 사용된 세제포장용 상자들을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화장비누 등 세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집드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세제류의 포장으로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를, 특히 ‘집들이’라는 구성 부분이 현저하게 드러나 보이게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와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고, 집들이라는 기재가 기술적(記述的) 포장이라든가 세제류 제조업자 사이에 관용되어 온 표시라고는 볼 수 없어,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서울고법 1995. 4. 18. 선고 94나35604 판결 : 확정)

☐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1. 피고는 그가 제조 판매 또는 확포하는 타올 제품에 별지 제1도면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타올 제품을 제조, 판매, 수출 또는 확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일보, ○○일보, ○○일보, ○○신문, ○○일보의 각 사회면 광고란에 제목은 초호활자 원고명은 4호 고딕활자 본문은 5호활자로 하여 별지 제2목록 사과문 기재 내용의 사과광고를 각 2회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등록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의 등록 상표인 '태양'이라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약국의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또는 거래 서류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인 '태양'이라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약국의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등 시설을 제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표사용금지 청구

1. 피고는 별지1 목록 표시의 각 표장을 부착한 별지2 목록 기재의 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그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1 목록 표시의 각 표장이 부착된 별지2 목록 기재의 완제품 및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이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비록 그 상품이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 상품표지의 소유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저명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른바 저명 상품표지인가의 여부는 그 표지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3] 지정상품이 구두인 '비제바노, VIGEVANO'를 요부로 하는 등록상표가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보아 그와 동일·유사한 등록상표를 시계 제품에 사용하더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상표권의 등록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 여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

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5]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 부등록 사유로 규정한 취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상품의 산지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려우므로 상품의 산지를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 보아 이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6] 상표 “비제바노”가 구두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7] 등록상표의 사용이 저명상표와 그 상품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권리남용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저명상표권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거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투자 등 각종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저명상표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의 사용이 저명상표와 그 상품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권리남용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저명상표권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거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투자 등 각종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저명상표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1] 제8호(라)목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8] 항소심에서 피고인수참가인이 소송에 인수참가하고 항소인인 피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여 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여 이를 인용하면서도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표시한 경우,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으로 판결을 경정할수 있는지 여부

승계인이 소송에 인수참가하고 그 전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한 경우, 전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은 인수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청구 인용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 항소한 후 피고인수참가인이 인수참가하고 피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였다면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할 것인데, 항소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 이를 인용하면서도 그 주문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만을 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의 주문을 바로 잡는 판결경정을 하면 된다.

☐ 상표사용금지등 청구

1. 피고는,
 - 가.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에 별지 제2항 기재 표장을 사용,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사용, 표시, 부착한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반포, 전시, 수입 또는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 나. 별지 제2항 기재 표장을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의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거래서류, 명함,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 선전물에 사용,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별지 제3항 기재 웹사이트에 게시된 별지 제2항 기재 표장을 삭제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표사용금지등 청구

1. 피고는 케이템플(K - tempool)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것을 사용한 서적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전항에 기재한 방법으로 제조한 서적, 상품판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상표를 인쇄한 인쇄물, 위 상표를 붙인 간판, 표찰, 위 서적에 관한 광고물을 폐기하고 전항기재의 방법으로 서적을 제조함에 필요한 설비를 제거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16,68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일보, ○○일보, ○○일보, ○○일보와 ○○신문지상에 3단 10cm의 크기로 각 1회에 걸쳐 위 상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신용을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사과하며 앞으로 위 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상품식별의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본 사례

본건 등록상표 아이템풀(Itempool)은 문제은행이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중 문제집, 서적, 팜플렛 등에 사용할 경우 이들 지정상품의 출제관리방식, 학습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어서 상품식별의 표준으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1984.1.19. 83가합2455)

☐ 상표사용금지 청구

피고는 그가 제조판매하는 해열진통제(○○○, ○○○ 산정) 및 그 은박포장지 또는 포장갑 또는 선전물 등에 상표 예프·그린·비(F-GREEN-B) 또는 그린(GREEN)을 각각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위 각 약품을 판매 확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상표 '아스피린'(Aspirin)과 '에이·피린·에이'(A-Pirin-A)의 유사성여부
상표 '아스피린'(Aspirin)과 '에이·피린·에이'(A-Pirin-A)는 외관, 칭호가 표상하는 관념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여 이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그 상품이 동종인 경우 서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많은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된다.(서울고법 1975.9.5. 선고 74나2743 판결)

☐ 상호사용금지 청구

1. 피고는 서울 ○○구 ○○동 1-2에서 경영하는 슬라이드 후아스나(일명 지퍼 또는 제크) 판매의 영업행위에 한국와이. 에이. 에이. 판매주식회사(한국와이. 에이. 에이. 판매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방법원 등기 제1000007호로 마쳐진 상호인 한국와이. 에이. 에이. 판매주식회사(한국와이. 에이. 에이. 판매주식회사)에 대한 1980. 4. 25.자 상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사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호라고 본 사례
한국 와이.케이.케이판매주식회사라는 상호 중 [와이.케이.케이]부분은 일본국의 요시다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가 그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Y.K.K.]의 영문알파벳발음을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서 국내 지퍼제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로서는 위 상호가 요시다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의 사장인 [Y.K.K.]와 동일 내지는 유사하여 위 [와이.케이.케이]를 자기상호의 중요부분으로 사용하는 한국와이.케이.케이주식회사의 지퍼판매행위가 요시다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 또는 그와 어떤 관계가 있는 회사의 영업행위인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기에 충분하다.(1989.1.30. 87가합724)

☐ 상품판매금지등 청구

1. 피고는, 그가 제조하는 상품에 '○○'이란 표시를 사용하거나 동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운주'라는 명칭의 상표의 효력

피고사용의 '운주'라는 상표는 일본국 시마네켄(도근현)일대를 지칭하던 옛 지명인 '운주'를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지방에서는 70년-80년 전부터 많은 주판제조업자들이 있어 그들 모두가 자기제품에 다 운주주판이란 상표를 붙여서 판매해 온 탓으로 일본국과 우리나라의 주판판매 업체나 주판수요자들 사이에는 운주주판이라 하면 위 운주지방 특산품인 주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위[운주]라는 상표는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내지 상품에 해당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인 [운주]는 피고사용의 '운주'라는 상표와의 상호유사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주]라는 상표에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다.(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456 판결)

❑ 표장등사용중지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 이○○, 김○○은,
가. 별지 목록 표시 각 표장을 선전 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또는 내·외부 간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위 제1항 기재 선전 광고물, 명함, 포장지 및 쇼핑백의 완제품과 반제품, 내·외부 간판을 각 폐기하라.
2. 피고 오○○은 별지 목록 표시 각 표장을 선전 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또는 내·외부 간판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 오○○은 그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위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및 쇼핑백의 완제품과 반제품, 내·외부 간판을 각 폐기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늘날 국제적인 추세는 상표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5. 11. 3. 관세청고시 제1995-943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통하여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이 있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통산산업부 고시 제1996-62호 '지적재산권관련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유형' 및 공정거래위원회 1997. 7. 15. 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관한 고시'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병행수입을 저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 그 자체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병행수입업자가 당해 진정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표장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병행수입업자의 제한 없는 상호, 표장 등 영업표지의 사용행위는 어느 정도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고 할 것이고, 결국 병행수입업자가 당해 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는 '진정상품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사용행위' 또는 '병행수입품의 광고에 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기술적·설명적으로 표기하는 정도의 사용행위' 등과 같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병행수입업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진정상품의 생산업체의 표장을 당해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매장의 내·외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명함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위 매장을 그 상품 생산업체의 공인대리점 혹은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장으로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④ 국내의 독점적 수입·판매대리점업자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므로, 국내의 독점적인 수입·판매대리점업자에게 비록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서울지법 1998.5.29. 선고 97가합32678 판결)

☐ 표장사용금지 청구

1. 피고는 시계, 포장물 또는 광고 선전물에 별지 제1목록 표시의 각 표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시계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반포, 광고,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의 본점, 영업소,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명함, 광고선전물에 부착 또는 인쇄된 별지 제1목록 표시의 각 표장과 위 각 표장을 인쇄하기 위한 필름, 지형 및 아연판을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POLO'라는 문자 및 말을 탄 사람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 중 문자 및 도형 부분 모두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 중 'POLO'라는 문자 부분의 경우 그 사전적 의미가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러한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열린 일이 없고 그에 관하여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해설된 바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POLO'라는 문자 부분을 위와 같은 경기 자체 혹은 그 경기시에 입는 셔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래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문자 부분을 그러한 경기 혹은 그와 관련된 셔츠의 보통 명칭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말을 탄 사람의 도형 부분도 그에 의하여 '마상경기를 하는 사람' 또는 '말탄 사람'이라는 칭호와 관념이 생성될 수 있어 이를 단순히 일상적인 경기장면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문자 및 도형 부분은 모두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

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등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類緣關係)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가 어렵다.

[3] 'POLO'라는 문자 및 도형 부분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의류분야에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에 따라 단순히 의류의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가방, 구두, 액세서리, 시계 등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위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 아닌 시계류 제품에 부착·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그 상품의 주체가 저명상표의 상표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되어 결국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등록취소심판이 계류 중인 등록상표에 기한 금지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

적법하게 출원·등록된 상표인 이상 비록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취소심결 등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상표권에 기한 금지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바. 경업금지·영업금지 등

☐ 경업금지등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지역에서 2006. 10. 18.까지 이용업을 할 수 없다.
2.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점포에서 경영하는 '태양 이용원'의 영업을 폐지하라.

제1목록

※ 경업 금지 지역

1. ○○시 ○○군 ○○읍, 2. ○○시 ○○군 ○○읍, 3. ○○시 ○○군 ○○면. 끝.

제2목록

※ 점포의 표시

○○시 ○○군 ○○읍 ○○리 1361-1(○○로136길 1) 지상 철근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3층 대중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주택 1층 소매점 93.48㎡, 2층 사무실 130.79㎡, 3층 주택 130.79㎡, 지층 대중음식점(사실상 이용원) 124.99㎡ 중 지층 124.99㎡에 있는 '태양 이용원' 점포. 끝.

경업금지등 청구

1. 피고는 ○○시 지역에서 2020. 1. 11.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시 ○○구 ○○로 123에서 경영하는 ‘○○○미용실’의 영업을 폐지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갑이 을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갑은 영업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을 폐지하고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갑이 을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갑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을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갑은 영업을 폐지하고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 확정)

영업금지등 청구(경업금지의무)

1. 피고들은 서울 ○○구에서 정육점영업을 10년간 금지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정육점의 영업을 양도한 후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서울지법 1993. 8. 24. 선고 93가합45225 판결)

☐ 영업금지등 청구

1. 피고 오○○, 피고 심○○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경영하는 ○○화장품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서○○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영업금지등 청구

1. 피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서울 ○○구 ○○로 123 1층 매장에서 커피, 녹차 등 다류,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제3자에게 위 1층 매장의 위 1.항 기재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가 위 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2.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영업행위금지등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미트(이하 '피고 미트'라고만 한다)는 2019. 5. 3.까지 국내산 소·돼지고기의 수매·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스스로 하거나 피고 주식회사 미트서울, 주식회사 미트광주, 주식회사 미트부산, 주식회사 육류(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미트서울, 미트광주, 미트부산, 육류'라고만 한다) 기타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미트서울, 미트광주, 미트부산, 육류는 각 2019. 5. 3.까지 국내산 소·돼지고기의 수매·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 미트는 2019. 5. 3.까지 소·돼지고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거나 피고 육류 기타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 육류는 2019. 5. 3.까지 소·돼지고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 영업방해·영업비밀침해·업무방해배제 등

☐ 영업방해금지 청구

피고는 ○○시 ○○구 ○○동 123-4(○○로 123길 4)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구내식당 30.5㎡에 출입하여 원고의 영업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노트 1권을 폐기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별 지]

제 1 목 록

피고 이○○이 199 . . .부터 199 . . .까지 원고 회사에 재직 중 지득하면서, 같은 피고가 199 . . . 원고 회사로부터 가지고 나간 같은 피고 소유의 노트(가로 0cm, 세로 0cm, 쪽수 0쪽)1권에 기재해 두었던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각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화공약품의 종류와 그 약품들의 조성비율 및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

제 2 목 록

번호	(1)원고의 상품명	(2)한국공업규격상의 명칭 또는 보통명칭	(3)사용, 공개금지기간
1	유성볼펜 30색	볼 펜	7년
2	향볼펜 4색		7년

[참조판례] ① 잉크 등 제조방법이 공언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 개발을 위하여 오랜 시간과 비용·노력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데,

회사에 재직 중 그 제조방법을 공책에 기재해 두었다가 고액의 급여와 상위 직위를 받는 조건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단기간에 유사한 잉크 등을 개발하게 한 사안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한 사례.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 침해행위로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원래 있었을 위치로 복구시켜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 및 공개의 금지는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독자적 개발이나 역설계(逆設計) 등 합법적 방법으로 그 제조방법을 취득하는 데 걸렸을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주로 원료가 10여 가지 안팎의 화공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 비율과 방법이 숫자와 알파벳 등의 문자로 정밀하게 표현되어 구성되어 있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판결에서 특정함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이 추구하는 영업비밀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 재직 중 지득하면서 어떤 공책 1권에 기재해 두었던 어떤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정보' 정도로 하고 더 나아가 그 공책의 실제 기재 내용과 똑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을 피한 사례.(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2. 22. 선고 94가합3033 판결 : 항소)

❖ 업무방해배제 청구

피고들은 원고가 ○○시 일원 내에서 생산자들로부터 견해태를 수위탁하여 원고회사에 운반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수산업협동조합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자의 견해태 소비지 직출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1조 제1항 수산청고시 제22호에 의하면 견해태의 양육 및 판매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곳(피고들 수산업협동조합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 위판장들)에서만 가능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원고 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가 피고들 관할구역 외에서 생산자들로부터 견해태를 수위탁 받아 소비지 직출하하는 업무를 피고들 조합이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22 판결)

❖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청구(시장의 시설관리 등)

피고는 ○○시 ○○구 ○○동 12-3(○○로12길 3) ○○중앙시장에서 동 시장의 시설관리(전기, 난방, 상하수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이에 대한 방화방재, 청소, 경비등) 및 동 시장의 영업관리(시장영업에 따르는 각종 단속, 업종조정, 위생환경정화, 질서유지, 유관기관과의 각종 지시공문수발, 시장관리비 과징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의 위 시설관리 및 영업관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아. 특허권·디자인권·저작권침해금지 등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⁴³⁹⁾

㉠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 제1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형식적으로 청구취지 보정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는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원체 및 그 완제품(염산시프로플록사신)을 생산,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및 별지 제1기재 공장, 지점, 연구소, 창고 및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시프로플록사신 원체, 그 완제품(염산시프로플록사신) 및 그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폐기하고 침해행위에 제공 및 사용되는 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경우와 화학물질의 제법발명의 경우에 있어 선행발명과 후발명이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소정의 이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

선행발명과 후발명이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소정의 이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행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

43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특허요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성립된다 할 것이나, 방법의 발명, 특히 화학물질의 제법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기계, 장치 등의 발명과 달라서 중간물질이나 촉매 등 어느 물질의 부가가 상호의 반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과정의 일시점을 잡아 선행방법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상호반응후에도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극히 곤란하여 기계, 장치등에 관한 발명에 적용될 위 법리를 제법발명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수단)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반응물질,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후발명은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8330 판결)

☐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는, (1)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2)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위 (1)항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3) 원고에게 3,064,180,036원 및 그 중 738,119,48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1,240,079,245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1,085,981,311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그 감광드럼을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허침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감광드럼에 관한 물건의 발명인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기재에 의하면 감광드럼을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또는 주조립체에 결합하여 사용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해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특허침해행위로 인한 수입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비용산출의 계산방식이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

피고는 별지 (가)표시 도면 및 설명서 기재의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 구동기를 생산, 사용, 판매 및 확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의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예

의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함은 현실적으로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및 동 텍메카니즘의 제조, 판매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을이 의장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그 성능검사를 의뢰하고 또 선전용 카달로그를 제작 배포하는 등 갑의 의장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한편으로는 갑의 발생의장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면 비록 현재는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기회만 허락되면 이러한 침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갑의 의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의장의 유사여부와 판단기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심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여부에 따라야 하고 또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전부적인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남부지원 1987.11.18. 선고 87가합1052 판결)

❖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

피고는 별지 도면 제1도 표시 내측 솔 주벽 (3)외측에 솔전 (2)를 씌운 다음 각각의 상주연부 즉 솔전 상부주연부(2)와 솔주벽 상부 주연부(3)를 별지 도면 제2도 표시와 같이 순차적으로 감압하여 완전 감합시킨 솔을 제조 판매 확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발행하거나 이에 대한 그 밖의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판례] ①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그 등록의 효력

저작권등록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한하므로, 저작권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는 설사 자기 명의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원양수인의 저작권양도등록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저작권양수인의 저작권양도등록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저작권은 물권과 같이 배타적 효력을 갖는 대세적 권리임에 비추어 그 자체의 효력으로써 스스로 대항요건인 등록을 구비할 권한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양도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수한 자의 저작권양도등록청구권은 그 저작권이 저작권법상의 존속기간을 경과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서울민사지법 1989. 5. 23. 선고 88가합51561 제17부판결 : 항소)

㊦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가), (나) 사진 표시의 각 도안이 있는 직물을 제조, 전시, 판매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가), (나) 사진 표시의 각 도안이 있는 직물 및 동 직물을 제조하기 위한 인쇄시설을 폐기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68,461,05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의장법과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산업계의 혼란 및 원래 산업상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의장권과 인간의 문화적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보호 목적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은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성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꽃무늬 등을 여러 가지 색채로 표현하고 이를 적당하게 배열하여 만든 2차원적인 직물디자인은,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인식되고, 지적·문화적 창작으로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며 저작자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져 창작성도 인정되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서울민사지법 1995. 1. 27. 선고 93가합48477 판결 : 항소)

㊦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1도면 기재 그림이 표시된 스티커, 전단, 카탈로그, 포스터, 액세서리, 의류, 벨트, 멜빵, 팔걸이 제품을 제작·판매·대여·배포·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의 매장, 사무소, 공장 및 창고에 있는 위 물건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지 및 선전광고물을 폐기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 ○○영화 주식회사는 영화 축제의 영화 필름, 홍보물, 광고물에, 피고 강○○은 소설 태양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에 별지 1. 기재의 글자를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영화 주식회사는 별지 1. 기재의 글자가 사용된 영화 태양의 영화 필름 부분, 홍보물, 광고물을, 피고 강○○은 위 글자가 사용된 소설 태양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을 각 폐기하라.
3. 가. 피고 ○○영화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일보, ○○일보, ○○일보의 광고란에 가로 8cm, 세로 9cm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고,
나. 피고 강○○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란에 가로 8cm, 세로 9cm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라.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제1, 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서울지법 1997.2.21. 선고 96가합42432 판결)

㉠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피고는 “(게임물 명칭 2 생략) for Kakao”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거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주소로서 “(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인터넷주소 2 생략)”을 사용하는 게임을 직, 간접적으로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9,982,098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5. 4. 1.부터 피고가 위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날까지 매월 87,855,8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자. 점유방해금지·점유물방해제거 등

㉠ 점유방해배제등 청구

1. 서울 ○○구 ○○동 197-36 대 786.8 m²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ㅂ, ㅅ, ㅎ, ㅍ, ㅌ, ㅊ,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5.3 m²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위 ㉠부분 105.3 m²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통행지역권설정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부인한 사례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②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미터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67 판결)

㉠ 점유방해금지 청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 및 좌판 설치 등 영업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부동산점유방해배제 청구(사무실 등)

피고는 ○○시 ○○동 123(○○로12길 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 3층 사무실 및 공장 100.2㎡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점유물방해제거등 청구

피고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요건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

②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42 판결)

㉢ 소유물방해제거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옥외주차장, 지하 2, 3층의 주차장, 지상 1층의 공용부분 983㎡(로비부분) 제5, 6, 7, 8호 엘리베이터를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 위 건물 중 지상 10, 11, 12층 외벽에 표지, 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건물 중 옥탑 등 공용부분 외벽에 지분 비율에 따라 표지, 간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의 지하 2, 3층의 주차장 및 제5, 6, 7, 8호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피고 전용표지와 그 엘리베이터에 설치한 피고 전용충만의 운행조작장치를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대형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관리단집회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면서 배타적인 관리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1993.5.7. 92가합 63417)

[참조판례]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 8097, 8103 판결)

㉠ 점유방해배제등 청구

1. 피고들은 서울 ○○구 ○○동 33-60 대 63㎡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20,526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체 결의만으로 자진철거기간이 경과한 사업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경우 위 건물 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위 건물의 가액 또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당연 조합원으로서 지장물(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갑이 자진철거기간 내에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서는 관할구청에 행정대집행을 의뢰할 수 있을 뿐 자력으로 이를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합이 자체결의만으로 위 건물을 철거한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위 건물은 그에 대한 자진철거기간이 도과하여 언제든지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될 형편에 있었고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라 위 건물이 철거되었다면 갑으로서 그 비용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던 것이므로 위 조합이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여 갑에게 그 가액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고, 위 대집행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갑이 그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철거권리자인 위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철거의무의 불이행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서 위 조합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1990. 12. 27. 선고 90가합7408 판결)

차. 출입금지·통행금지·통행방해배제 등

㉠ 출입금지 청구

1. 피고는 부산 ○○구 ○○동 574 전 94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1, ㄴ 1, ㄷ 1, ㄹ 1, ㅁ 1, ㅂ 1, ㅅ 1, ㅇ 1, ㅈ 1, ㅊ 1, ㅋ 1, ㆁ 1, ㄷ 2, ㄴ 2, ㄹ 2, ㅁ 1, ㅂ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은 선내 ㉠부분 72㎡를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입 및 예배방해금지등 청구(교회)

1. 피고들은 ○○시 ○○동 368-5(○○로368길 5) 지상 세멘벽돌조 아연즙 단층 교회 77.4㎡ 및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단층 주택 16.4㎡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건물을 원고가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통로보전 청구(지역권행사)

1. 원고에게 ○○시 ○○동 123-4 대지 69㎡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에 관하여 지역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선내부분 2㎡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 지역권행사에 방해되는 물건을 제거하고 위 지역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수방해배제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전북 ○○군 ○○면 ○○리 54-8 영산강하천부지 서쪽편 제방밑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상의 폭 2.7m, 깊이 2m, 길이 145m의 파괴된 수로를 설치하라.
2. 피고는 원고 전일남이 별지 목록 제1기재 농지에, 원고 전이명이 별지 목록 제2기재 농지에 각 인수 또는 배수하기 위하여 위 제1항의 수로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용수방해자에 대한 용수권자의 방해제거청구의 내용

농경에 필수적인 수로를 파괴하여 필요한 용수에 장애를 야기한 자는 그 장애를 제거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의 의무도 있다.(군산지원 1987.1.30. 선고 86가단416 판결)

☐ 통행금지 청구

1. 피고들은 서울 ○○구 ○○동 60-28 대 8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10㎡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20㎡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불능하거나 통행이 불편한 경우에는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와 공로사이에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든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위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서울지법 1984.6.5. 선고 83가합5975 판결)

☐ 도로통행금지등 청구

1. 피고 한주수는 (1) 서울 ○○구 ○○동 13-29 대 264㎡ 중 별지 1호 도면 표시 4, ㉑, ㉒, 12, 11,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다), (라)부분 132㎡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에게 같은 도면 표시 1, 2, 3의 굵기 0.2m, 세로 0.3m, 높이 1.8m의 연와조 대문기둥 3개, 같은 도면 표시 1, 2 각 점을 연결하는 길이 1.8m, 높이 1.8m의 목조대문 2짝과 2, 3 각 점을 연결하는 길이 0.9m, 높이 1.8m의 목조대문 1짝, 같은 도면 표시 15의 지름 2.2m, 16의 지름 1.3m의 각 대문 위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 같은 도면 표시 3에서 6에 이르는 길이 13.2m, 높이 1.8m 내지 3.8m, 두께 0.2m의 연와조 담장과 6에서 7에 이르는 길이 1.1m, 높이 3.8m, 두께 0.2m의 연와조 담장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11.6㎡(이하, 이 사건 토지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2. 원고에게, 피고 최○○은 2,922,502원, 피고 한주수는 2,708,683원 및 1990. 4. 3.부터 이 사건 토지침범부분의 인도 및 같은 도면 표시 (라)부분에 대한 통행금지시까지 월 39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침범된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이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세금의 체납으로 공매되게 된 토지가 도로이외 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매가격이 싼데도 원매 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감정가보다도 더 싸게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곧바로 원소유자 등을 상대로 통행금지와 부당이득금청구 및 매수청구 등의 소송을 제 기하였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바램에 통행금지청구부분은 패소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침범한 건축물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으며,

위 토지의 면적이 264제곱미터임에 비하여 철거를 구하는 건축물의 침범부분은 약 11.6제곱미터에 불과하다면 위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소송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 및 침범된 부분의 면적과 침범건축물의 형태 등에 비추어 토지 소유자가 침범부분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소유권에 기하여 침범된 건축물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6911, 16928 판결)

☐ 통행방해금지 청구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7.8㎡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통행방해금지 청구

1. 피고는 대구 ○○구 ○○동 123-3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3, 2, 1, 9, 8, 12, 11, 10, 5,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을 원고가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통행지역권 내지 통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 내지는 통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는 단순히 통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고 통로의 소유자가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적어도 통로의 소유자가 통행지역권 또는 통행권을 인정할만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덧붙여질 것을 필요로 한다.(대구고법 1984.11.20. 선고 84나310 판결)

☐ 통행방해금지등 청구

1. 피고들은 원고가 서울 ○○구 ○○동 5가 4-1 대 55㎡ 중 별지 도면 표시 (차)(다)(나)(카)점을 연결한 10㎡ 부분을 통행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 도면 중 (다)(나)점을 연결하는 지점에 시설한 장애물을 제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일반 시효취득요건 이외에 계속되고 표현된 것임을 요하므로 통행지역권과 같이 계속성이 없는 지역권은 권리자가 통로를 개설하는 등 특별한 승역지를 설 사이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서울고법 1965.4.22. 선고 64나364 판결)

☐ 통행방해금지 청구

1. 피고는 서울 ○○구 ○○동 567 답 48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도로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통행방해배제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983-4 도로 101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0.4㎡지상에 축조된 석조 스테이지붕 주택 1동 건평 0.4㎡와 같은 도면 표시 2, 7, 8, 9,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4㎡지상에 축조된 석조 스라브지붕 부엌 1동 건평 4.4㎡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3, 11, 12, 13, 14, 3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8.5㎡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22906 판결)

[참조판례]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45268 판결)

[참조판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 지정만으로써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의 통행자에게 도로에 관한 통행권 또는 통행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제3자가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11.7. 선고 95다2203 판결)

㉠ 통로통행방해배제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시 ○○동 361-109 대 602㎡ 중 별지 도면표시 15, 2, 16,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 부분 0.5㎡ 지상의 벽돌조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가 위 ㉠ 부분 0.5㎡ 및 같은 도면표시 11, 12, 13, 16, 15, 14,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 부분 22.5㎡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노폭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 공1994하, 3068)

㉡ 통행방해제거등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서울 ○○구 ○○동 183-5 대 28㎡ 중, 별지 제2도면 가, 나, 다 부분 21.5㎡에 대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위 대지부분 21.5㎡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매월 ㎡당 50원씩의 지료를 수령함을 조건으로, 위 대지부분 21.5㎡에 대한 원고들의 통행을 인용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용 통행로와 사이에 불원간 철거가 예상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이른바 표위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 인접대지 소유자들의 점용허가와 건물의 증축 등에 의하여 현재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막혀 있는 이상 설사 그곳에 너비 8미터의 도로개설계획이 서 있다 하더라도 표위 토지라고 보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서울고법 1969.5.30. 선고 67나2662 판결)

카.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㉔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본소) · 손해배상(기)등(반소) 청구(간접강제)

[본 소 :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등]

1. 피고는 원고가 비식용○○를 만드는 기계로 조제○○를 제조하고 있다는 취지와 외국 법령상 사용금지된 원료 또는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여 조제○○를 제조하고 있다는 취지 기타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만약 피고가 위 1. 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한 광고 1건에 대하여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일보, ○○일보, ○○일보, ○○일보, ○○일보의 각 제1면 광고란에 가로 37cm, 세로 17cm의 크기로, 제목은 1호(38급)활자로, 소제목은 2호(32급)활자로, 본문 2부분은 4호(20급)활자로, 본문 4, 5부분은 3호(24급)활자로, 그 외 다른 부분은 5호(15급)활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죄문을 게재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반 소 : 손해배상(기) 등]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가 보건사회부 등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허위 비방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취지, 모함광고로 기존업계를 헐뜯고 있거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있다는 취지, 저온처리○○ 라면서 실제로는 고온처리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 합성세제나 화학제품도 만드는 기계로 어린이 조제○○를 제조하고 있다는 취지, 어린이○○ 제조에 부적합한 ○○○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 ○○지방법원 99카12345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취지, 기타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만약 원고(반소피고)가 이에 위반한 광고를 한 때에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그 위반한 광고 1건에 대하여 100,000,000원씩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 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 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②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 인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종류와 성격, 피해 회사의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피해 회사의 규모 및 영업실적, 비방광고들의 허위성의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비방광고 행태 전반에서 드러나는 악의성의 정도, 조제분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보수성, 부정적 광고가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과 지속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함이 곤란한 점,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비방광고 회사의 규모와 재산 정도 등 여러 사 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③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④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명이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